

인천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2가단2281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1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. 12. 25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. 2. 17. 접수 제50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양승우

별지